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334 관 련
----------	------------

제안연월일 : 2022년 12월 16일
제 안 자 : 행정자치위원장

1. 수정이유

- 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고, 온라인 평생교육의 포괄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조문을 수정함.

2.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의 추진 주체를 명확히 함(안 제명).
- 제정안의 목적을 알기 쉽게 함(안 제1조).
- 온라인 평생교육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
- 시장의 책무를 명확하게 함.(안 제4조).
- 조 제목에 핵심적인 내용을 드러나도록 함(안 제6조).
- 교육지원 사업의 대상을 명확히 함(안 제7조).
- 실태조사 수행방법을 규정함(안 제8조).
- 온라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협력대상을 명확히 함(안 제10조).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명 중 “지원”을 “운영”로 한다.

안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온라인 평생교육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시민의 공정하고 균등한 온라인 평생교육 및 취약계층의 교육격차 해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 제2조 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평생교육”이란 「평생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교육활동을 말한다.

안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온라인 평생교육”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평생교육을 의미한다.

안 제2조제3호(종전 안 제2조제2호) 중 “인공지능·빅데이터 등의 디지털”을 “디지털”로 하고, 제4호(종전 안 제2조제3호) 중 “있는 이용 가치 있는 각종”을 “있는 각종”으로 한다.

안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은 온라인 평생교육에 관하여 서울시민의 공정하고 균등한 온라인 평생교육 및 취약계층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안 제5조제1항제4호 중 “평생교육 지원”을 “평생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추진하는 교육 관련 공공 및 민간 법인 등에”를 “추진하기 위하여”로 한다.

안 제6조의 제목 중 “평생교육시스템 품질관리 및 정보처리”를 “평생교육시스템의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온라인 평생교육시스템에서”를 “온라인 평생교육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로 하며, 같은 조·항 제1호 중 “학습이력, 학습태도 등”을 “학습이력 등”으로 한다.

안 제6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안 제7조제1항 중 “만 6세 이상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을 “6세 이상 24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으로 하고, 같은 조·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 중 “청소년”을 각각 “아동·청소년”으로 한다.

안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안 제9조제1항 중 “중앙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을 “정부기관”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수정 조문대비표 〉

제 정 안	수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u>지원</u>에 관한 조례안</p> <p>제1조(목적) <u>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교육격차 해소 및 서울시민의 공정하고 균등한 온라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평생교육”이란 <u>학교의 정규교육 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 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 신 설 ></p> <p>2. “온라인 평생교육시스템”이란 <u>인</u></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u>운영</u>에 관한 조례안</p> <p>제1조(목적) <u>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온라인 평생교육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시민의 공정하고 균등한 온라인 평생교육 및 취약계층의 교육격차 해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정의) (제정안과 같음)</p> <p>1. “평생교육”이란 「<u>평생교육법</u>」 제2조 제1호에 따른 <u>교육활동을 말한다.</u></p> <p>2. “<u>온라인 평생교육</u>”이란 <u>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평생교육을 의미한다.</u></p> <p>3. “온라인 평생교육시스템”이란 <u>디</u></p>

제 정 안	수 정 안
<p><u>공지능·빅데이터 등의 디지털</u> 기술을 이용하여 다양한 학습자원 및 지식정보 등을 통합·연계하여 시민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서비스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p>	<p><u>지텔</u> 기술을 이용하여 다양한 학습자원 및 지식정보 등을 통합·연계하여 시민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서비스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p>
<p>3. “학습자원”이란 학습을 촉진시키기 위해 학습자에 의해 활용되는 자원으로, 공공기관 및 민간이 생산·보유·관리하고 <u>있는 이용 가치 있는 각종</u> 교육자료, 학습 콘텐츠 및 서비스, 학습도구 등을 말한다.</p>	<p>4. “학습자원”이란 학습을 촉진시키기 위해 학습자에 의해 활용되는 자원으로, 공공기관 및 민간이 생산·보유·관리하고 <u>있는 각종</u> 교육자료, 학습 콘텐츠 및 서비스, 학습도구 등을 말한다.</p>
<p>4. “멘토링”이란 경험과 지식 및 재능을 갖춘 자(멘토)의 학습지도 및 정서 지원을 통해 학습자(멘티)의 역량과 잠재력 등을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p>	<p>5. (제정안과 같음)</p>
<p>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온라인 평생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정안과 같음)</p>
<p>제4조(시장의 책무) <u>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u>은 <u>교육환경의 급속한 디지털화에 대응하고, 소득 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 및 공정하고 균등한 온라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u></p>	<p>제4조(시장의 책무) <u>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u>은 <u>온라인 평생교육에 관하여 서울시민의 공정하고 균등한 온라인 평생교육 및 취약계층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u></p>

제 정 안	수 정 안
<p><u>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u></p> <p>제5조(추진사업)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의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평생교육 학습자원의 효율적 연계·활용·수집을 위한 온라인 평생교육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보수·관리 2. 취약계층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온라인 교육지원 서비스 제공 3. 시민의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을 위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 4. 그 외 공정하고 균등한 온라인 <u>평생교육 지원</u>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학습 콘텐츠를 개발하거나 임차 등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직접 개발 2. 다른 법인·기관·단체 등(이하 “법 	<p>제5조(추진사업) ① (제정안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정안과 같음) 2. (제정안과 같음) 3. (제정안과 같음) 4. 그 외 공정하고 균등한 온라인 <u>평생교육</u>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p>② (제정안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정안과 같음) 2. (제정안과 같음)

제정안	수정안
<p>인 등”이라 한다)의 우수 학습 콘텐츠를 임차</p> <p>3. 다른 법인 등과의 교류를 통한 학습 콘텐츠 공동 개발·활용</p> <p>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u>추진하는 교육 관련 공공 및 민간 법인 등에</u>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6조(온라인 <u>평생교육시스템 품질관리 및 정보처리</u>) ① 시장은 시민이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구축한 온라인 평생교육시스템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시스템 품질관리 및 적절한 품질 수준의 확보, 신기술을 이용한 지속적 서비스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u>온라인 평생교육시스템에</u> <u>서</u>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p> <p>1. 이용자의 기본정보, 정형 및 비정형의 <u>학습이력, 학습태도 등</u> 각종 활동이력 정보</p>	<p>3. (제정안과 같음)</p> <p>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u>추진하기 위하여</u>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6조(온라인 <u>평생교육시스템의 운영</u>) ① 시장은 시민이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구축한 온라인 평생교육시스템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시스템 품질관리 및 적절한 품질 수준의 확보, 신기술을 이용한 지속적 서비스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u>온라인 평생교육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u>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p> <p>1. 이용자의 기본정보, 정형 및 비정형의 <u>학습이력 등</u> 각종 활동이력 정보</p>

제 정 안	수 정 안
2. 이용자가 수행한 과제 및 그 과제에 대한 평가결과 등의 정보	2. (제정안과 같음)
3. 멘토링 서비스 이용 현황에 대한 각종 통계 및 멘토링 이력·평가 등의 정보	3. (제정안과 같음)
4. 개인별 맞춤형 생애학습진로설계를 위한 상담이력 및 내용 정보	4. (제정안과 같음)
5. 그 밖에 온라인 평생교육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정보	5. (제정안과 같음)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u>< 삭 제 ></u>
1. 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을 확보할 것	<u>< 삭 제 ></u>
2. 정보의 최신성·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할 것	<u>< 삭 제 ></u>
④ 온라인 평생교육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조사하거나 제공받은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며, 관련 법령과 이 조례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처리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제정안과 같음)

제정안	수정안
<p>제7조(취약계층 교육지원 사업) ①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u>만 6세 이상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u>을 대상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의 <u>청소년</u>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의 <u>청소년</u>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밖청소년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5조제2항에 따라 본인 또는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북한이탈주민인 <u>청소년</u> 6.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가족의 셋째 자녀 이상의 <u>청소년</u> 	<p>제7조(취약계층 교육지원 사업) ①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u>6세 이상 24세 이하의 아동·청소년</u>을 대상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의 <u>아동·청소년</u>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의 <u>아동·청소년</u>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u>아동·청소년</u> 4. (제정안과 같음)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5조제2항에 따라 본인 또는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북한이탈주민인 <u>아동·청소년</u> 6.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가족의 셋째 자녀 이상의 <u>아동·</u>

제 정 안	수 정 안
<p><u>년</u>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의 순위로 정한다. 다만, 재혼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법」이나 「가족관계등록법」상 공부로 증명되는 쌍방의 친자를 모두 자녀 수에 포함하되, 현재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에 등재된 경우에만 순위에 포함한다.</p> <p>7.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본인 및 배우자, 자녀에 해당하는 <u>청소년</u>. 다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경우는 배우자, 자녀, 손자녀에 해당하는 <u>청소년</u>으로 한다.</p> <p>8. 그 밖에 시장이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u>청소년</u></p> <p>② 제1항의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온라인 평생교육시스템 강의 수강권 및 교재 2. 학습·진로·진학·취업 등과 관련한 교육 콘텐츠 및 체험형 학습프로그램 등 	<p><u>청소년</u>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의 순위로 정한다. 다만, 재혼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법」이나 「가족관계등록법」상 공부로 증명되는 쌍방의 친자를 모두 자녀 수에 포함하되, 현재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에 등재된 경우에만 순위에 포함한다.</p> <p>7.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본인 및 배우자, 자녀에 해당하는 <u>아동·청소년</u>. 다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경우는 배우자, 자녀, 손자녀에 해당하는 <u>아동·청소년</u>으로 한다.</p> <p>8. 그 밖에 시장이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u>아동·청소년</u></p> <p>② (제정안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정안과 같음) 2. (제정안과 같음)

제정안	수정안
<p>3. 학습지도 및 정서 지원을 위한 멘토링 서비스</p> <p>4. 그 밖에 취약계층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p> <p>③ 제1항의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기준, 지원시기, 지원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p> <p>제8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한 정책추진을 위하여 취약계층의 교육격차 현황, 시민의 온라인 평생교육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p> <p>② <u>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공공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u></p> <p>제9조(공동활용 및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u>중앙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u>이 보유한 학습자원의 공동활용 및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p>3. (제정안과 같음)</p> <p>4. (제정안과 같음)</p> <p>③ (제정안과 같음)</p> <p>제8조(실태조사) ① (제정안과 같음)</p> <p>② <u>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u></p> <p>제9조(공동활용 및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u>정부기관, 공공기관 및 민간</u>이 보유한 학습자원의 공동활용 및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제 정 안	수 정 안
<p>② 시장은 온라인 평생교육시스템의 일부 기능을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이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p> <p>제10조(이용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p> <p>① 시장은 온라인 평생교육시스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홍보를 추진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홍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민참여 행사 등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참여자에게 시상하거나 경품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11조(표창)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관련하여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p> <p>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 (제정안과 같음)</p> <p>제10조(이용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p> <p>① (제정안과 같음)</p> <p>② (제정안과 같음)</p> <p>제11조(표창) (제정안과 같음)</p> <p>제12조(시행규칙) (제정안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정안과 같음)</p>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온라인 평생교육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시민의 공정하고 균등한 온라인 평생교육 및 취약계층의 교육격차 해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평생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온라인 평생교육”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평생교육을 의미한다.
3. “온라인 평생교육시스템”이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다양한 학습자원 및 지식정보 등을 통합·연계하여 시민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서비스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4. “학습자원”이란 학습을 촉진시키기 위해 학습자에 의해 활용되는 자원으로, 공공기관 및 민간이 생산·보유·관리하고 있는 각종 교육자료, 학습 콘텐츠 및 서비스, 학습도구 등을 말한다.
5. “멘토링”이란 경험과 지식 및 재능을 갖춘 자(멘토)의 학습지도 및 정서 지원을 통해 학습자(멘티)의 역량과 잠재력 등을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온라인 평생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은 온라인 평생교육에 관하여 서울시민의 공정하고 균등한 온라인 평생교육 및 취약계층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사업)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의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평생교육 학습자원의 효율적 연계·활용·수집을 위한 온라인 평생교육 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보수·관리
2. 취약계층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온라인 교육지원 서비스 제공
3. 시민의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을 위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
4. 그 외 공정하고 균등한 온라인 평생교육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학습 콘텐츠를 개발하거나 임차 등을 할 수 있다.

1. 직접 개발
2. 다른 법인·기관·단체 등(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우수 학습 콘텐츠를 임차
3. 다른 법인 등과의 교류를 통한 학습 콘텐츠 공동 개발·활용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온라인 평생교육시스템의 운영) ① 시장은 시민이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구축한 온라인 평생교육시스템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시스템 품질관리 및 적절한 품질 수준의 확보, 신기술을 이용한 지속적 서비스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온라인 평생교육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기본정보, 정형 및 비정형의 학습이력 등 각종 활동이력 정보
2. 이용자가 수행한 과제 및 그 과제에 대한 평가결과 등의 정보
3. 멘토링 서비스 이용 현황에 대한 각종 통계 및 멘토링 이력·평가 등의 정보
4. 개인별 맞춤형 생애학습진로설계를 위한 상담이력 및 내용 정보
5. 그 밖에 온라인 평생교육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정보

③ 온라인 평생교육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조사하거나 제공받은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며, 관련 법령과 이 조례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처리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취약계층 교육지원 사업) ①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6세 이상 24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의 아동·청소년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 」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의 아동·청소년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청소년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밖청소년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5조제2항에 따라 본인 또는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북한이탈주민인 아동·청소년
 6.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가족의 셋째 자녀 이상의 아동·청소년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의 순위로 정한다. 다만, 재혼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법」이나 「가족관계등록법」상 공부로 증명되는 쌍방의 친자를 모두 자녀 수에 포함하되, 현재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에 등재된 경우에만 순위에 포함한다.
 7.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본인 및 배우자, 자녀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 다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경우는 배우자, 자녀, 손자녀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으로 한다.
 8. 그 밖에 시장이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청소년
 - ② 제1항의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온라인 평생교육시스템 강의 수강권 및 교재
 2. 학습·진로·진학·취업 등과 관련한 교육 콘텐츠 및 체험형 학습프로그램 등
 3. 학습지도 및 정서 지원을 위한 멘토링 서비스
 4. 그 밖에 취약계층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
 - ③ 제1항의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기준, 지원시기, 지원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한 정책추진을 위하여 취약계층의 교육격차 현황, 시민의 온라인 평생교육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공동활용 및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정부기관, 공공기관 및 민간이 보유한 학습자원의 공동활용 및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온라인 평생교육시스템의 일부 기능을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이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이용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 ① 시장은 온라인 평생교육시스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홍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홍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민참여 행사 등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참여자에게 시상하거나 경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표창)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관련하여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